

제 호

환경유해인자 시험·검사기관 지정(변경지정)서

1. 기 관 명:
2. 사업자등록번호:
3. 대 표 자:
4. 주 소:

「환경보건법」 제23조의2제1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제4항 및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(변경지정)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직인